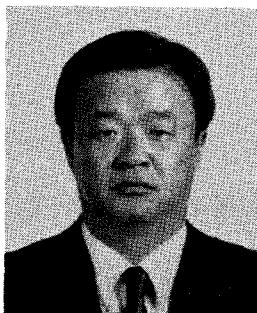


소련상표

제도해설(1)



宋 晚 鎬
(辨理士)

目 次

- I. 소련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
 - II. 상표권의 취득
 - III. 상표권과 보호
-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I. 소련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

1. 상표의 유형과 그 특징

소련 법률상 상표라고하는 것은 확립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특정한 기업의 상품과 다른 기업의 유사한 상품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법(The Statute on Trademark) 제14조에 따르면 상표는 상표들의 외관상의 관점으로 볼 때 문자표장, 도형표장, 입체적표장 및 기타표장으로 분류된다.

상표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색채, 소리, 빛 및 기타 표장도 등록이 가능하다.

문자표장은 낱말들이나 낱말형태를 띤 문자들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도형표장은

- 생물이나 무생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

- 추상적인 형상 및 상징들

- 장식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조합물들

- 각각 인공적으로 변형된 인쇄물 및 숫자들

- 위에서 나열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결합시킨 것

등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입체적인 표장은 일반적으로 생산물이나 이것을 포장할 때의 기발한 착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창조적인 병과 휴대 용기들은 가끔 입체적인 표장(Three-Dimensional Mark)으로 등록된다.

그림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마담 세레프 코프 그레스사가 국제분류 제3류로 분류하여 출원한 독창적인 형태의 화장수 병이 소련에 등록되었다.

그림 1



결합상표(Combination Trademark)는 도형, 문자, 입체적인 요인 및 또 다른 요인들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그림1에서 보여주는 표장은 사실 입체적인 요인과 문자적인 요인이 결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수 병의 독창적인 형태를 더하여 “cabochard”와 “GRES”라는 문자들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결합상표가 외국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상표들의 총 숫자 중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결합상표가 소련에서 등록되었는데 아래 그림 2는 일본상사인 낫쁜 가끼 주식회사 명의의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표장이며, 그림 3에서는 폴란드 기업인 부마 외국무역기업소유의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상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3



상표가 상품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든지 서어비스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든지 간에 상표들은 고유의 상표와 서비스상표로 나누어진다.

서비스상표는 소련기업들과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행위를 제공하는 것과 연관된 행위를 주로하는 외국인의 법인들도 소유할 수 있다.

상표법 제7조에 따르면, 서비스상표는 상표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등록에 기반을 둔 권리의 보호뿐 아니라 서비스상표의 등록과 사용에 연관된 모든 문제는 상표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는 상표의 소유자가 약간의 상품제조에 덧붙여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상품들과 서비스의 분류들을 표시한 표장을 단일 출원하여 등록해야 한다. 즉, 일개출원에 최대한 42개류의 상품

및 서비스를 모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상표법에 단체표장(Collective Trademark)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단체표장(Collective Trademark)”이라는 용어는 상표법률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883년 열린 파리조약의 한 가입국이었으며 그조약의 7항에 포함된 상표조항은 소련 상표규정에 통합되었다.

사실상, 단체 표장의 법적인 보호는 1936년 이래로 계속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1936년 3월 7일 소련정부에 의해 선포된 법령에는 “무역 기관들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들 및 협회들은 그들을 구성하는 모든기업들의 공통상표를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8조에 따르면 “상표의 독점적인 사용에 관한 권리”는 국영기업, 국영기관 및 법인의 지위를 갖고 제조나 무역업부에 종사하는 협회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소련 국영경제의 구조하에서 협회는 기업과 기관의 경제적인 연합을 말한다.

“Domochim”과 “Assofoto”라는 상표는 국제적 경제기관의 명의로 소련에서 등록된 단체 표장의 예라 할 수 있다.

2. 상표의 필요조건

어떤 표장이 상표의 형태를 보호받기를 주장하면서 무엇보다도 상표법상의 필요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상표법 제15조(A)에 의하면 유사한 상품에 대한 상표로서 먼저 출원되었거나 먼저 등록된 상표 및 소련이 가맹국인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유사상품이란 종류와 유형이 같은 상품으로서 유사한 표장이 부착될 경우 그러한 상품들이 한사람, 같은 제조업자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표장의 유사성이란 이러한 표장들의 기반을 이루는 주제가 동일하게 인식될 때를 말한다.

표장의 유사함은 표장의 구성요소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유사성의 정도는 그 표장의 전반적인 구성 중 각 구성요소의 중요도 뿐만 아니라 상호동일부분과 비동일부분간의 비율에 따라 판단한다.

한마디로 표장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원칙적 기준은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다. 선등록된 표장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등록이 거부된 문자상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미국 상사인 다우 화학회사(The Dow Chemical Company)가 등록 신청을 한 “Tandem”상표(상품분류 제5류 : 제초제)는 스위스 시바 가이 기사(Ciba-Geigy AG) 명의로 선등록된 “Tandex”상표(상품분류 제5류 : 제초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었다.

—“Visidex”표(미국 Miles Laboratories Inc. 국제분류 제1류)는 서독 베링거 만하임 게엠바하 상사의 명의로 국제분류 제1류에 속하는 상품에 적용되어 선등록된 “Visudex”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었다.

다음 요인들은 상품의 유사성을 결정하는데 참작되는 사항이다.

—상품의 유형

—상품의 용도

—시장조건 즉, 상품의 특정시장 및 유통과정

상표법 제 15조(B)에 따르면 특정활동과 연관되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징 및 용어뿐 아니라 특정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상표로서 등록이 허여되지 아니한다.

특정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이라는 것은 상표로서 일단 등록이 되었으나 불특정다수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식별력을 상실한 일반명칭 혹은 특정명칭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표장을 말하는 바, 예를 들면 바셀린(Vaseline), 더모스(thermos), 러버로이드(rubberoid), 나일론(nylon), 셀로판(cellophane)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떤 활동들과 연관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된 상징이라 함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산업의 분야나 사업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

장을 말한다. 그러한 표장들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표장의 예로는 의복을 생산하는 회사를 상징하는 “실과 바늘”, 기계류를 생산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톱니바퀴” 및 수리점을 대변하는 “렌치”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인된 용어라고 함은 과학, 기술 등의 전문분야와 연관된 어휘군으로 코발트, 크롬 및 유체역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상표법 제15조(C)에 의하면 식별력이 결여된 표장이나 그러한 상표의 성질표시적 특성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여기서 성질표시적인 특성(Descriptive nature)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 선 및 숫자

—낱말의 형태를 띠지않는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상품의 단순한 표현

—상품의 제조시기뿐만 아니라 상품의 제조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 제조장소, 상품시장, 상품의 종류나 품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여기에서는 상품을 친미하는 자료도 포함된다.) 상품의 양, 성분, 비중, 재료, 용도, 가공하지 않은 원료 및 상품의 효능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낱말의 형태를 띠지않는 글자들의 배합으로 구성된 표장은 낱말로 여겨질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표장들은 소련에서 발음하기 힘든 낱말로서 MRS(Mechanical-Repair Shop), SFF(Saratov furniture factory)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에서 제외되는 것은 특징적인 그래픽 형태를 띠는 표장들로써 그 이유는 이 표장들이 의장상표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된다 함은 통상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인시키는데 이용되는 일반명칭과 특정명칭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상품들을 단순하게 표현하거나 상품을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을 말하는 것이다.

성질표시적인 표장들은 상품의 용도,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문자상표이다. 문자상표로서 성

질표시적인 표장의 예로는 미국 플라우주식회사(Plaugh Inc.)명의로 되어 있는 “FOR FACES ONLY”는 소련에서 항수류, 화장품, 로션 및 비누 등의 상품분류 제3류에 출원되었으나 그 표장이 주어진 상품들의 사용용도를 표시한다 하여 거절사정되었다.

상품제조에 관한 자료라 함은 상품을 제조한 회사의 약력과 주소에 대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쨌든 상품들을 식별시켜 주지 못한다.

상품을 찬미하는 Prima, Extra, Lux 및 Ligeros 등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상품이 품질이나 특성을 표시하는 표장들이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 흔하게 출원되었으나 이것 또한 거절사정되었다.

상표법 제15조(D)에 의하면 제조회사의 원산지 및 공인된 국제적기관 등의 국기, 군복, 기타 문장과 국경일 및 공휴일의 명칭 등을 그 단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산지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는 지리적명칭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한 회사가 등록했을 때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용 권리를 막고 그 회사의 상품에 그러한 지리적인 명칭을 사용할 가능성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이름, 강이름 및 고대도시의 이름과 같이 상품의 산지를 직접 표시하지 않는 지리적인 명칭은 상표로서 등록원부에 등록이 허여된다. 동시에, 그러한 표장들의 사용은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 상표를 소유한 회사는 그 상표에 표시된 지역에 위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표장들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매달형태를 띤 그림이나 장식적인 그림들은 다른 회사에 의해 상품에 쓰여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누구에게도 독점사용권이 주어질 수 없다.

상표법 제15조(E)에 따르면 공인, 보증 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명칭이나 봉인(seals) 및

봉인과 유사한 것만으로 구성된 것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상표법 제15조(F)에 의하면 제조자나 상품에 관한 허위, 기만적정보를 포함한 것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그 예로는 서독상사가 출원한 것으로 Tallin의 옛 도시명인 Reval과 이태리상사가 출원한 미국의 도시명, Boston을 들 수 있다.

상표법 제15조(G,H)에 따르면 사회주의자의 법률 및 도덕과 일치하지 않는 개념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것은 상표로써 등록될 수 없다.

그러나 상기의 상표법 제15조(B),(C),(D)에서 제기된 표장은 그것이 상표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상표로서 사용이 허락된다.

한상표의 구성요소중 부등록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권리불요구(Disclaimer)표시를 함으로써 등록될 수 있다.

상표법 제16조에 의하면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칭은 출원인이 그 명칭의 범위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상품의 특성이 주로 그나라의 고유한 자연조건, 인간적요소에 의존한다고 볼때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칭은 출원인이 그 명칭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상표를 구성하는 범위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상품의 특성이 주로 그나라의 고유한 자연조건, 인간적요소에 의존한다고 볼때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칭은 나라명, 거주지의 명칭 및 다른 지형적인 대상물 등에서 보여지듯 지형적인 특질을 나타내는 표장에 불과하다.

—위치를 나타내는 지형적인 명칭

예)Gurjaani(포도주 상표)

Borzhomi, Essentuki, Arzni(탄산수 상표들)

—상품의 특별한 명칭과 지형적인 명칭을 합한 상표

예)Vologda lace, Dymkovo toys, Rostov enamel

—종래의 상품명에 지형적인 명칭을 합한 경우

예)Stavropol amber <계속>